

통합허가(석유정제·화학업종) 관련업계 간담회

(2021. 1. 22, 환경부, 관련협회)

□ 업종별 추진 현황

업종	허가 대상 (A+B+C)	허가 완료 (A)	허가 완료 예정 시기						유예 만료
			신청, 사전협의 완료			미신청			
			소계 (B)	'21	'22~	소계 (C)	'21	'22~	
석유화학	13	4	2	-	-	7	7	-	'21년
합성고무	7	2	3	-	-	2	2	-	'21년
합성수지	34	3	4	-	-	27	27	-	'21년
소계	54	9*	9	-	-	36	36	-	-
석유정제	10	1	-	-	-	9	2	7	'22년
기초유기	43	-	3	3	-	40	13	27	'22년
기초무기	30	1	1	1	-	28	5	23	'22년
무연탄등	13	-	-	-	-	13	6	7	'22년
정밀화학	62	2	-	-	-	60	10	50	'22년
비료제조	17	-	-	-	-	17	3	14	'22년
소계	175	4	4	4		167	39	128	-
합계	229	13	13	4		203	75	128	-

※ **파란색** 테두리는 '21년까지 통합허가 이행대상 사업장(총 54개소 중 45개소 허가 필요)

* 금호석유화학(주) 울산고무공장, 대림산업(주) 여수공장, 여천NCC(주) 여수1공장, 여천NCC(주) 여수3공장, LG화학(주) 김천공장, 울산피피(주),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 토머스(주), 울산아로마틱스(주), 롯데케미칼(주) 여수2공장

⇒ ('21년 허가완료 대상) 허가대상 45개 사업장 상반기내 본허가 신청 필요, 특히 대형사업장(NCC 등)은 허가검토 소요시간을 감안, 1분기 신청

※ '22년 만료대상 석유정제업의 경우 모든 사업장이 금년 내 사전협의를 신청 하여야 기한 내 허가 검토 가능

□ 석유화학 허가검토 추진 방향

① 통합허가 적기 추진

(배경) 기한내 허가 미완료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허가의 적기 착수 유도를 위해 허가 추진상황 주기적 파악(매분기)
- 주요공정 계획서 작성 및 허가검토 공유를 위해 선도사업장 운영(10개)
- 조기 허가 이행 시 재검토 기한 연장, 시설 개선기간 부여 등

② 기술검토 실효성 확보

(배경) 기술검토 수준 향상으로 개별허가 미흡사항 보완

- 허가의 통일성을 위해 **공정별* 기술검토 전문화**(공정별로 기술검토자 지정)
- 쟁점시설(F/S, T/K, 가열로, SRU 등)에 대한 처리기술 및 처리 수준 검증
- 방지시설 면제시설을 포함한 모든 배출구 허가 前 모니터링 추진

③ 생산 공정 환경성 강화(“산업의 녹색화”)

(배경) 획기적 저감을 위해서 사후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긴요

- 유해인자 최소화를 위해 투입물질(원부재료, 첨가제, 촉매)의 환경성 검토
- 비정기 운영 방출구(PSV, VENT, B/V, R/V 등) 연결상태 및 배출수준 검증
- 누출시설(VOC, HAP) 목록화 및 누출억제조치 검토(※ PRTR 연계)

④ 사업장 편의성 제고

(배경)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허가 진행, 계획서 작성에 편의성 제공

- 주요사항 위주의 **사전협의 탄력적 운영**(입지, 사업장 범위 확정, 배출기준, 방지시설 수준 및 용량 등)으로 신증설 프로젝트 불확실성 제거
- 허가 주요수단(배출영향분석, 통합공정도, BAT 적용 등)의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 개정법률 주요 내용('21.1.5. 공포)

①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 시행('21.7.1.~)

- 기존 대행업자는 '21.12.31.까지 대행업 등록없이 허가 대행이 가능하나, 계약분에 대해서는 '21.12.31.까지 허가완료 필요
- 거짓·부실작성 금지, 재대행 금지, 수행 능력 평가 등

< 주요 내용 >

- 허가대행업자 등록(법제11조의2)
 - 인력,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 등록기준 하위법령에 명시 예정)
- 관련자 준수사항(법제11조의4)
 - 거짓·부실 작성금지 자료 보존, 명의대여·재대행 금지, 작성성 요구금지
 - ※ 거짓·부실 기준, 재대행 가능 업무 등은 하위법령에 명시 예정
- 허가대행업자 등록취소, 영업정지(법제11조의7)
 - 거짓·부정 등록, 영업정지 중 계약, 2년이상 무실적, 부정한 영업실적 평가, 변경등록 미이행 등(※ 행정처분 하위법령에 명시 예정)
- 허가대행업자 수행능력 평가(법제11조의8)
- 허가대행업자 대행실적보고, 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금지(법제11조의9~11)
- 대행업 등록제 경과조치(기존업자의 경우 법 시행 6개월까지 무등록 인정)
 - ⇒ (향후계획) 하위법령안 마련(~'21.1월말),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21.2월초), 하위법령 공포·시행('21.7.1.)

② 과징금 신설

- 유예 만료기한 내 통합허가 미완료 시 사용중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최대 10억원, 배출업체에 부과)

□ 주요 공유사항

① 플레어 스택 기술검토지침 시행('21.1.1. 사전협의 신청분부터 적용)

- Max Flare load 및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적정성
- Smokeless Capacity* 및 연소보조재(스팀 또는 공기) 투입량 산정 방법
 - * S C = (0.138 + (16,000/플레어스택 설계용량)) * 100(%)
- Control Valve 등 플레어스택으로 배출되는 Normal Flare 적정성

② 석유정제업 시설설치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12) 일부개정안

2) 저장용량이 20m³이상인 유류저장시설은 저장용량의 110퍼센트 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진 방류벽(단, 위험물질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설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기존 저장시설의 경우 제외)과 저장용량의 90퍼센트 이상 주입 시 넘침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공급차단 장치 또는 수위 경보장치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누유 여부의 모니터링 시설 및 누유 시 경보가 작동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3) 플레어스택(flare stack)은 비상운전 상황에 대비하여 환경·안전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운전중 플레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③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 먼지 배출영향분석 시 총먼지 중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분율을 업종별로 설정(* 사업자가 실측을 통해서도 미세먼지 분율 설정 가능)

<업종별 미세먼지 분율안>

구 분		분율	
발전업종 (연소)	액체연료	B-A유/B-B유/B-C유/경유/보일러등유	59.2
	기체연료	LNG, LPG, 프로판	100
	고체연료	무연탄, 유연탄	58.2
		기타 연료(부생가스, 혼소 등)	58.9
		폐기물처리업	72.4
		석유 정제품 제조업	28.9
		1차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	43.9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51.0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55.4
		펄프, 종이 및 판지, 기타종이 제조업	60.0
		그 밖의 제조업(기타 공정)	50.4

④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추진안('21. 상반기 법률개정 추진)

- 통합환경관리사업장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일정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경우 선임(선임자격 충족 필요)
- 타 법률상 의무고용자와 겸임 금지(*유해화학물질 관리인과도 겸직 불가)
- 기존 환경관리인은 일정교육 이수시 통합환경관리인 지위 승계(부칙안)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구분	선 임 기 준	
	통합환경관리인	통합환경총괄관리인
대기 1종, 수질 1종	2명 이상	1명 이상 - 통합환경총괄관리인과 통합환경관리인은 겸직할 수 없음
대기[수질] 1종, 수질[대기] 2종	1명 이상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 가능
대기[수질] 1종, 수질[대기] 3종~5종	1명 이상	
대기 2종, 수질 2종	1명 이상	1명 이상
대기[수질] 2종, 수질[대기] 3종~5종	1명 이상	- 통합환경관리인이 통합환경총괄관리인을 겸할 수 있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통합환경총괄관리인	통합환경관리인
1) 환경부문(「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1- 환경분야: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1)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2)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4)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⑤ 변경허가 대상 완화 추진안('21년 하위법령 개정 예정)

- 현행법상 단순 변경사항도 대부분 변경허가에 해당하여, 허가기관 및 사업장의 부담이 되고 있어, 허가조건·기준의 재검토(변경)이 수반되는 중요 변경사항*만 변경허가로 정비, 기타 단순 변경사항은 변경신고

* ①개별법상 (변경)허가사항, ②허가기준 재검토 사항, ③신규 배출시설 신설 등

구 분	변경신고 대상
<p>별표3 제1호 가목 15)부터 24) 신설</p>	<p>가. 배출시설등을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5)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p> <p>16)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p> <p>17) 법 제2조제2호라목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p> <p>18)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p> <p>19)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p> <p>20)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법 제2조제2호아목의 악취배출시설(이하 “악취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법 제2조제1호바목의 악취 중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것 외에 새로운 악취를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p> <p>21) 법 제2조제2호차목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p> <p>2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이 지정·고시될 때(같은 항 제2호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이 고시될 때를 말한다)에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p> <p>2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p> <p>24)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p>

구 분	변경신고 대상
별표3 제1호 다목 4) 신설	다. 배출시설등에 사용하는 원료·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운영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3 제2호 아목 및 자목 신설	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오염물질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로서 허가조건을 새로 설정하여 배출구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자. 아목에 따른 측정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관련업계 건의사항